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일성건설(주)(유필상) ② 신동아건설(주)(이인찬)

③ (주)세진에스엠씨(최경식) ④ (주)화성개발(도훈찬)

나. 전화번호 : ① 02-3271-6201 ② 02-748-8850 ③ 02-784-1451 ④ 053-760-3737

2. 명칭 : 순환 구조형 실시간 다항목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을 적용한 내진 구조형 항균 SMC 물탱크 공법(HIGH CLEAN WATER TANK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건축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150℃ 이상의 고온에서 유압 Press에 의해 균질한 형태로 생산된 고강도의 SMC 패널을 활용한 기술로 소재 특성에 따른 내진 성능 확보 및 내부 수질 상태의 실시간 검측 및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다항목(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탁도, 전기전도도, 수온)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을 개발 및 적용하여, 수질 오염 방지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내진 구조형 항균 SMC 물탱크(HIGH CLEAN WATER TANK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고강도 SMC 패널과 수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측 및 관리가 가능한 다항목(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탁도, 전기전도도, 수온)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수질 및 구조적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내진 구조형 항균 SMC 물탱크 공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간 한국부동산원에 포괄적으로 위탁되어 온 신고내용 조사업무 중 위탁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내용 조사권 위탁범위 명확화(안 제19조의4)

신고내용 조사업무 중 조사 대상자 선정, 보안요구 및 접수, 제출 자료의 적정성 확인 등만 위탁범위에 포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락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신일에코텍(주)(주상대) ②우영환경개발(주)(주상현)

나. 전화번호 : ①02-453-2857 ②02-571-7501